

#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계약 진행 시 필히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미 지참 시 계약불가)

## ■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일부개정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계약금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체결일 납부에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로 변경되었지만,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계약체결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 ■ 가산세 : 기간별 최대 300% 부과(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3.1.1부터 변경 시행)

기간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적용 제외 대상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온라인 이용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3** 구매(납부정보 입력)

구분	내용
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150,000원
건수	1건



**4** 출력 ※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이용방법

**1** 우체국·은행 방문 (방문 전 문의 요망)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3** 전자수입인지 발급